

공동주택(아파트)의 정보통신설비 설치자격 안내

□ 안내배경

- 공동주택(아파트)내의 홈네트워크, CCTV, 주차차단기, 인터폰, 원격자동검침 등의 설비는 「정보통신공사업법」에 의한 정보통신설비로서 시공기술을 보유한 정보통신공사업자만이 설치 및 유지보수(정기점검 포함) 할 수 있습니다.
- 그러나,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정보통신설비를 장비 도·소매업체 또는 전기공사업체 등 정보통신관련 기술인력을 보유하지 않은 무자격자에게 발주하여 법령위반 등 문제가 발생됨에 따라, 관련법령과 설치 및 유지보수자격 등에 대해 안내 드리오니,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 업무시 반드시 관련자격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관련법령

- 「정보통신공사업법」 제2조(정의), 제3조(공사의 제한), 제29조(공사의 도급), 제74조(별칙) 제76조(별칙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관련 별표1(공사의 종류)
-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-946호 「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」

□ 공동주택(아파트)의 정보통신설비 및 설치자격

- 공동주택(아파트)에 설치되는 주요 정보통신설비에는,
 - 홈네트워크설비, 구내통신선로설비, 방송공동수신설비, 자동출입문설비, 인터폰(로비폰 등)설비, 방송설비, 주차설비(주차차단기, 차량번호인식 시스템 등), CCTV설비, 방범설비, 비상전화 및 비상벨 설비(엘리베이터, 지하주차장 등), 도시가스 계량기 원격자동검침설비 등이 있으며,

- 동 설비는 「정보통신공사업법」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 관련 별표1에서 정보통신설비로 규정하고,
 - 같은 법 제3조에서 동 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는 정보통신공사 업체만이 수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- 이는 홈네트워크설비, CCTV설비 등 공동주택내의 정보통신설비는 입주민의 편익은 물론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어 있는 중요한 시설 해당되므로 일정수준 이상의 정보통신 전문기술력을 보유한 정보통신공사업체만 시공 및 유지보수토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.

※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은 시.도지사가 발급.관리

□ 국토부 고시 상의 자격제한 규정

- 「정보통신공사업법」 제3조에는 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자(이하“공사업자”라 한다)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다로 규정하고 있고, 「정보통신공사업법」 제29조에는 발주자는 공사를 공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,
- 국토교통부 고시제2016-943호 「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」 제6조 제1항 및 별표3에 따라 ‘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은 무효’도록 하고, 제16조 제1항제7호에서 입찰 공고시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
- 따라서,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를 발주하는 경우 「정보통신공사업법」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자로 제한하여야 하며, 입찰공고문에 입찰참가자격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.

□ 무자격자에게 발주시 문제점 및 처벌 규정

- 정보통신장비 도소매업자, 전기공사업자 등 무자격자에게 정보통신설비의 설치를 맡길 경우, 정보통신설비가 정상작동 되지 않거나 A/S가 되지 않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며, 이에 대한 불이익은 아파트 입주민이 받게 될 것입니다. 이는 단순한 불편 차원이 아니라 입주민의 안전 등에도 상당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.
- 따라서, 「정보통신공사업법」에서는 무자격자의 정보통신설비 설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, 이를 발주(계약)한 자(입주자대표, 관리사무소 등)에게도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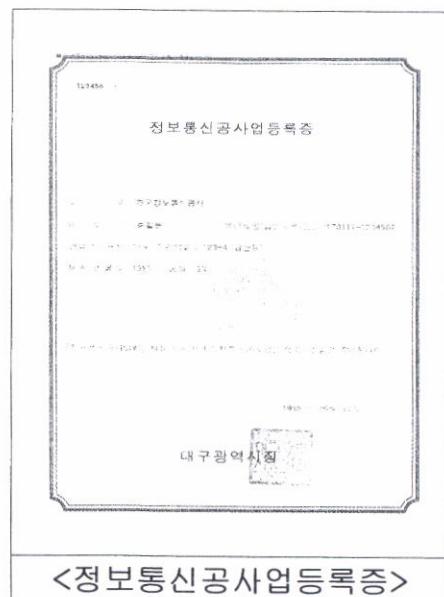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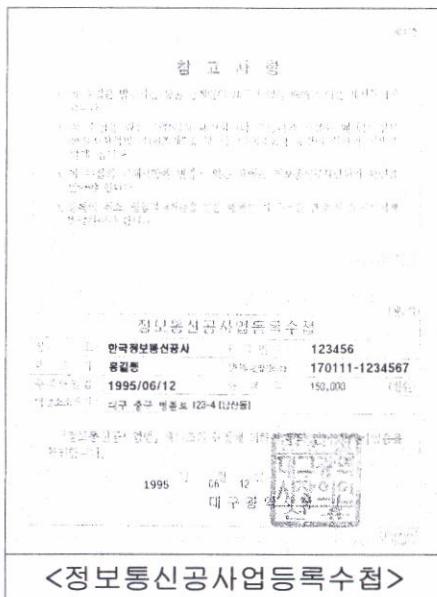
□ 요청사항

- 공동주택(아파트)내의 정보통신설비 설치시 반드시 「정보통신공사업법」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 등록(면허)업체에게 발주(계약)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※ 입찰공고시 “입찰참가자격”에 정보통신공사업체로 반드시 명시 요망

<참고>

□ 시·도지사에게 등록한 정보통신공사업체 확인 방법

- 정보통신공사업체는 관할 시·도지사(광역지자체장)가 발행한 “정보통신공사업등록수첩” 및 “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”을 보유하고 있음에 따라,
 -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는 입찰 및 계약시 아래 사본을 제출받거나 우리 협회 홈페이지(www.kica.or.kr)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

※ 국내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(면허보유업체)는 9,439개사임(2017.8.31. 기준)

□ 문의사항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

- 한국정보통신공사업회(www.kica.or.kr) 사업지원팀 ☎ 02) 3488-6132~6135

협회 지역시도회	주 소	전화번호	FAX번호
서울시회	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, 4~5층(갈월동)	02) 3487-0404	02) 3487-0405
인천·경기도회	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24(영덕동)	031) 271-1500	031) 271-0229
부산·울산·경남도회	부산광역시 동구 조방로 14, 8층 816(범일동, 동일타워)	051) 462-4800	051) 462-4664
대구·경북도회	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남로 167(신암동)	053) 742-2100	053) 742-2102
광주·전남도회	광주광역시 서구 대남대로 475(농성동)	062) 653-0077	062) 675-9955
대전·세종·충남도회	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664(구암동)	042) 824-0860	042) 824-0863
강원도회	강원도 원주시 원문로 174-3(단계동)	033) 731-5000	033) 731-5002
전북도회	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반나무1길 15-3(효자동1가)	063) 225-0404	063) 225-0400
충북도회	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충정대로 107번길 37-7(율령동)	043) 212-0404	043) 212-0405
제주도회	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1길 4(도남동)	064) 752-4445	064) 752-2349